



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34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6
1. 총괄 검토	6
가. 제정안의 개요	6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8
2.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4조) ..	12
나. 기본계획 등의 수립,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등 (안 제5~9조)	14
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 한 특례 (안 제10·11조)	20
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안 제12조)	23
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클 러스터 지정 해제 (안 제13조~제15조)	26
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 반도체산업진흥 센터 설치 등 (안 제16조~제20조)	31
사. 고용보조금 및 세제지원 (안 제23·24조)	35
아. 인·허가 의제, 각종 특례 (안 제25·26조)	38
※ 참고자료	4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29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생산(파운드리)의 경우 한국과 대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왔지만, 시대가 흘러 AI반도체 등 ‘반도체의 새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재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상황임. 또한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자국 내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까지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여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음.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바, 전 세계는

AI반도체가 촉발한 ‘반도체의 또다른 미래’를 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음. 전세계가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황상,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뒤처질 수 없기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산업을 위한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정부 차원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의 수립,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밖의 여러 가지 지원 대책 및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반도체산업을 통한 생산 유발 650조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명, 소부장 협력기업 매출 204조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권 확립’을 통한 반도체산업 및 경제 강국으로 지속 발전될 수 있게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의 추진 등을 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20조).

타.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함(안 제24조).

파.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를
·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안 제25조).

하.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
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
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요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핵심 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하려는 취지의 특별법안으로서, 총 26개의 본 조항과 시행일 등 2개의 부칙 조항으로 구성됨.

[표 1]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의 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10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제1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2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

제정안의 구성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정 해제)
제16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7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제18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제19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제21조(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22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2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24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26조(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총론적 사항으로 목적, 정의,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4조).

추진체계로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안 제9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립(안 제5·6조),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16조),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운용(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 관련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 반영(안 제10조),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안 제11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안 제13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안 제14조),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안 제17조), 인력의 양성 및 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18·19조),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안 제20조), 국제협력(안 제21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안 제23조), 세제지원(안 제2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안 제25조), 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안 제26조)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나.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정안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법 제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임.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 국내 수출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메모리반도체 외에 팹리스¹⁾, 시스템반도체²⁾, 파운드리³⁾ 등의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

력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이들 분야에 대한 역량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⁴⁾.

또한,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로봇 등 미래 산업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국가 간 안보와 연계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함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이 갈수록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투자와 지원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⁵⁾ 전방위적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산업에서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비메모리 분야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등 미래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 및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강력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반도체산업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
- 1) 팹리스(fabless)는 제조 설비(fabrication facility)가 없다(less)는 뜻으로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 및 기술 개발만 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 2)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시스템을 하나의 칩으로 만든 반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대비됨.
 - 3) 파운드리(foundry)는 반도체의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을 전문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 4) [참고자료 1] 반도체 산업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참조
 - 5) [참고자료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지원 현황 참조

적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기존의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체계와의 차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정 '22. 2. 3., 시행 '22. 8. 4.)은 '22년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 패권경쟁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에서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로서, 제정 당시 동법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릴만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주된 제정 목적이었고, 용인·평택 지역에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조성·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특별조치법임.

동 법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설치,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

계획(5년 단위) 및 실행계획(매년) 수립, 현황조사 및 관련 통계의 작성,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조성·운영 지원,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제정안에서 반영하려 하는 사항들을 이미 다수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검토함에 있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의 공통점 및 차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롭게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보완·개정하는 방안 중 어떠한 방안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법률 체계 및 행정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적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반도체산업에 집중하고,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로 설치하며(안 제9조), 생산시설 구축·인프라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안 제13조),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및 국가·지자체의 비용 부담(안 제14조),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안 제25조), 각종 특례(안 제26조) 등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차별화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1~4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등을 설계, 제조, 공급 등 사업화하는 산업 나. 가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IP·SW·소재·부품·장비·패키징 등 공급망 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사업화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을 하는 산업 2. “반도체클러스터”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반도체의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정안 제1조 내지 제4조는 법률의 목적,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목적)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등 제정이유에서 기술한 바와 부합하며,

안 제2조(정의)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의조항을 두어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기술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안 제3조는 국가 및 지자체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단, 안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 중 IP, SW 등 축약된 형태의 외국어로 되어 있는 사항은 지적재산, 소프트웨어 등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4조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완화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비롯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관련 통계의 작성 등 유사한 내용의 행정상 의무조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내용 중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등 행정상의 중복 및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기본계획 등의 수립, 현황조사 및 통계 작성,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등 (안 제5~9조)

제 정 안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7.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반도체산업의 시설투자 또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8. 반도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9. 반도체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산업적·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 및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제 정 안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제도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산업 특례에 관한 사항
8.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업계·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반도

제 정 안

체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⑤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사업자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정안 제7조 및 제8조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현행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도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9조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설치하려는 것임.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반도체특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경우 컨트롤타워의 위상이 올라감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동 제정안의 반도체특위와 유사하게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원하는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장관급)인 간사위원으로 규정⁶⁾하고 있음. 제정안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반도체특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유사한 위상과 구조로 보이는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아닌 반도체특위의 간사위원인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도체특위’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 제7조는 유사·중복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가 추진 중에 있는 바, 반도체특위와 현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교육부는, 인적자원정책과 관련하여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반도체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은 단독 부처가 아닌 범부처 협력을 필요로 하므로 안 제5조제3항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특위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추가하여 2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환경부는, 반도체특위 심의 안건에 관계부처 규제 일원화, 인·허가의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전력망 설치 및 확충,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안 제10·11조)

제 정 안
제10조(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보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추진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제1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
5.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제정안 제10조는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1조는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반도체특위가 심의·의결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반도체산업은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전력수급계획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경우 효과적으로 전력 수급을 계획하고 신속한 전력 설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조문에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의 수립 주체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으로, 제정안에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도체특위가 심의·의결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예타조사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는데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⁷⁾과 유사하게 ①예타조사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기정통부장관이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또는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또는 반도체특위의 결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항과 조사대상 우선 선정 사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에는 면제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포괄적·항구적인 예타 우선선정 및 예타 면제 규정에 대하여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7)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를 면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의 예타 특례 조항 등과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반도체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6. 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7.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차입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③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 2. 반도체클러스터의 생산시설 구축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3.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4.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실행을 위한 사업

제 정 안
5.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6. 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치·운영 7.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반도체산업의 기술개발사업 9. 반도체산업의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11. 반도체산업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2.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3.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 제12조는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대규모 기반시설과 초격차 기술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 투자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세액공제 등 천문학적인 금액⁸⁾을 동원하여 반도체 산업을 경쟁적으로 지원 중임.

제정안과 같이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보

8) 미국은 총 390억 달러, 보조금은 투자액의 5~15% 수준(최대 30억 달러 한도)을 지원하고, 일본은 총 1.7조엔, 보조금은 투자액의 33~40% 수준을, EU는 회원국별 보조금 책정 후 EU 집행위 승인, 보조금은 투자액 30~50% 수준을 지원하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조금 지급, 기반시설설치 비용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회계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은 특별회계 신설시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및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특정한 세입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과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에 따른 효과성 및 성과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성과 및 지속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에 따른 반도체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신설 요건 및 정부의 재정운용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설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마.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해제 (안 제13조~제15조)

제 정 안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 ①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제조·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세제적 등의 특례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재정 지원 및 특례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의 운영 등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전력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 정 안
4.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정 해제)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간에 해당하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행정적·세제적 특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4조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설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및 조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이와 관련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 산업기반시설의 직접 설치 및 비

용 부담 의무 등을 규정함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집중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 본격적 반도체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투입과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안 제13조에 따른 ‘원활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은 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첨단전략산업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직접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일본·EU 등은 자국 내에 투자하는 자국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미국은 390억 달러의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및 750억 달러의 대출,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5G 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설비투자 보조금으로 현재 2조엔 이상의 예산을 책정한 것 등으로 알려져 있음.

[표 2] 세계 주요국 및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자지원(인센티브) 현황

구분		미국	대만	EU	일본	우리나라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약 53조원)	-	€430억 (약 64조원)	¥2조 (약 17조원)	-
세액 공제	시설	25%	5%	-	-	15~25%
	R&D	-	25%	-	6~12%	30~50%
기간		~‘26년	~‘29년	~‘30년	-	~‘24년

* 출처 : 대한상의(‘24.6월)

한편,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현재 첨단전략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3년부터 특화단지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⁹⁾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대 수 조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하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 제14조는 산업기반시설 설치 시, 전력·용수·폐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직접 건설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범위는 의무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와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 범위와 필요성에 맞게 적정하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재정·행정·세제지원을 명시적 의무로 규정한 부분은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동의하며,

다만, 반도체클러스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구성·기능이 유사한데, 이미 지정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

9) [참고자료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참조

하여 일관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도체클러스터가 중첩되어 지정되는 경우 재정적·행정상의 중복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4. 6. 26.)¹⁰⁾을 마련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중이므로 안 제1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안 제14조는 산업기반설치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필요성과 막대한 재정소요 우려를 감안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지원방법·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환경부는 안 제14조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조항

10) [참고자료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24. 6)의 주요내용 참조

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정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완화된 지원 근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바.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 반도체산업 진흥센터 설치 등 (안 제16조~제20조)

제 정 안
제16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클러스터 육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입지, 세제, 재정, 행정 등에 관한 지원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성능검증 및 실증센터 구축사업 3. 그 밖에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18조(반도체산업 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인력의 연구개발 및 전략경영 관련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유지 및 안정에 관한 사항
5. 퇴직근로자 등 반도체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정을 위한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반도체산업 시장 및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반도체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3.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4. 기업의 반도체설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및 반도체 분야 세부 신산업 발

제 정 안

굴 지원에 관한 사업

5. 반도체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반도체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 진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6조부터 제20조는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시책,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및 확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산업진흥센터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동 사항은 대체적으로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등에 따라 기존에도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도체특위 등의 관리·감독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등에 집중적·구체적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기관은 「첨단산업법」에 따라 이미 선정되어 운영 중¹¹⁾이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 산업 진흥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반도체산업협회·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 등과 기능·역할이 유사하므로 설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25. 1월 시행예정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도 유사한 내용의 조문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적고, 특히 양성기관의 지정 및 비용지원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재정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되므로 동의하기 어려우며,

반도체산업진흥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기관 등이 반도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연구개발, 진흥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반도체산업에 국한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11) 특성화대학 18개소, 특성화대학원 6개소,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소 등임.

교육부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대학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협의 규정을 반영하거나 지정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정부’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사. 고용보조금, 세제지원 (안 제23·24조)

제 정 안
제23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반도체 산업 사업자에게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①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반도체산업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중고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정안 제23조는 고용보조금의 지급, 제24조는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및 시설·장비 투자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조금 지급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통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 연구개발, 인력개발, 시설·장비 투자 등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고용보조금의 경우, 현행 첨단전략산업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른 별도의 지급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산업 사업자에게 대통령과 조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반도체 사업자의 인력확보를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반도체 산업 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국가의 고용보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세제지원의 경우, 현행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산업 사업화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음¹²⁾.

12) 사업화 시설·장비 투자 비용 :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연구개발 비용 : (대·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다만, 현행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¹³⁾ 등에 따라 조세 특례규정 신설 등 감면 여부는 조세 관계법을 통해서만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개별법에서 세제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¹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원론적인 세제지원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조세 특례규정 신설 등 비과세·감면 여부는 통합관리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관계법을 통해서만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제정안의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특례의 제한)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과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아. 인·허가 의제, 각종 특례 (안 제25·26조)

제 정 안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반도체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가 반도체산업을 위한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때에 제9조에 따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약·동의·해제·심의·등록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①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반도체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반도체산업을 하기 위한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 ② 반도체산업 전문 우수 인력 및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정안 제25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이고, 안 제26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로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허용하며, 중소기업에 한하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근거를 두고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반도체특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모든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복잡한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에 지연을 해소하고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규제를 각종 협의 및 의견청취 없이 생략하거나 지역·주민 등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오히려 원활한 사업추진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의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의 경우, 어떠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제 대상 인·허가를 법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장 설치 확대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관

점에서의 규제 유지 필요성을 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비과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의욕 고취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원론적인 근거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현행 스톡옵션 특례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중소기업 및 특정 업종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므로 제정안 제26조는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물량 배정,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 중이며, 다만, 형태가 다양하고 구분이 어려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공장 신·증설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비수도권과의 갈등, 산업 간의 형평성 문제로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경상북도 및 부산광역시도 경기남부권을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책 발표 후, 지역사회의 수도권 블랙홀 현상 가속화가 우려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서 모든 개발사업 전에 국가유산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문화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지정·등록유산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인·허가 의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 1

반도체 산업 규모 및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출처 : OMDIA)

□ 글로벌 산업 규모

(단위: 억불)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전체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메모리반도체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NAND	540	610	460	572	685	594	387
시스템반도체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광개별소자	686	731	743	767	899	917	888

□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시장점유율

(단위: 억불)

구 분	지 역	'17	'18	'19	'20	'21	'22	'23
반도체 Total	세 계	4,315	4,846	4,286	4,756	5,944	5,977	5,448
	한 국	923	1,146	790	871	1,166	1,054	717
	(%)	21.4%	23.7%	18.4%	18.3%	19.6%	17.6%	13.2%
메모리반도체	세 계	1,319	1,646	1,125	1,281	1,685	1,443	946
	한 국	801	1,016	657	730	995	872	577
	(%)	60.7%	61.7%	58.4%	56.9%	59.1%	60.4%	61.0%
	DRAM	735	989	622	663	941	793	512
	한 국	531	716	445	472	671	559	376
	(%)	72.3%	72.4%	71.6%	71.1%	71.3%	70.6%	73.5%
NAND	세 계	540	610	460	572	685	594	387
	한 국	269	299	211	257	324	313	201
	(%)	49.9%	49.0%	45.9%	45.0%	47.2%	52.6%	52.0%
시스템반도체	세 계	2,309	2,469	2,417	2,707	3,359	3,616	3,614
	한 국	69	76	78	78	100	115	84
	(%)	3.0%	3.1%	3.2%	2.9%	3.0%	3.2%	2.3%
광개별소자	세 계	686	731	743	767	899	917	888
	한 국	53	55	55	63	71	67	56
	(%)	7.7%	7.5%	7.4%	8.2%	7.9%	7.3%	6.3%

참고 2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현황

- ① (미국) 「반도체 과학법」 제정 ('22.8월)을 통해 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527억불(약 73조원) 규모 보조금·대출·보증 재원 마련
 - * 美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BAE시스템스(英) 3,500만불('23.12), 마이크로칩(美) 1.6억불('24.1), 글로벌파운드리스(美) 15억불('24.2), 인텔(美) 200억불('24.3)
 - 「국세법(IRC)」을 개정 ('22.8월)하여 반도체 장비·제조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 혜택 제공
- ② (일본)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21.11)를 통해 1.7조엔*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 조성
 - * ('21) 6,170억엔, ('22) 4,500억엔, ('23) 6,322억엔
 - * 日 반도체 보조금 지원 사례 : TSMC 공장에 4,760억엔 지급 (약 4.4조원, '22), 마이크론(美)에 2,135억엔 (약 1.9조원, '23.10) 지급 결정 등
 - 반도체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최대 20% 감면 발표 ('23.12)
 - * 반도체, 전기차, 그린철강, 그린케미컬,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 ③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23.1) 등을 통해 R&D 및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입지·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
 - R&D 투자액의 25%,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액의 5%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의 30% 한도, '24.7~'29.12)
- ④ (중국) 역대 최대 3,440억 위안(약 65조원) 규모 반도체 3차 빅펀드 조성 발표 ('24.5)
 - * 과거 사례 : 1차 펀드('14, 1,390억 위안), 2차 펀드('19, 2,040억 위안) 조성
 - 반도체 분야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및 집적회로 생산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 제공

참고 3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투자 동향

- 삼성전자(용인 국가산단) : '28년 1호 팹 착공 예정('30년 완공)
- SK하이닉스(용인 일반산단) : 1호 팹 부지 조성 **40%** 완료된 상태, 투자 계획에 맞춰 '25.3월 1호 팹 착공 예정('27.5월 완공)

□ 반도체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계획

- 전력 : 용인 국가·일반산단 내 팹 준공 시기에 맞춰 '**53년까지 10GW** 이상 필요 → 신안성변전소를 통한 **2.8GW** 既 확보
 - 용인 국가산단 : '30년부터 산단 내 **LNG** 발전소로 **3GW** 공급,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6GW** 이상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한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8GW** 既 확보('21.12월), '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3GW** 이상 공급
- 용수 : 용인 국가·일반산단에 '**53년까지 136만톤** 이상 필요
 - 용인 국가산단 : '31년부터 하수 재이용수, 팔당댐을 통해 **20만톤** 공급 + '35년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통해 **60만톤** 추가 공급
 - 용인 일반산단 : 여주보에서 **26.5만톤** 既 확보(~'27년), 팔당댐에서 **30.8만톤** 확보 중(~'35년)

□ 국비 지원 현황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3년 용인·평택 **1천억원**, '24년 포항·구미 등 **439억원** 예산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현황 >

구 분	예산 지원액	지원 항목
용인·평택	1,0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변전소·송전선로 (500억원) ■ 용인·평택 일반산단 용수관로 (500억원)
구 미	200억원	■ 구미대교 신축 (200억원)
포 항	154억원	■ 영일만산단 정수장 증설 및 용수관로 (154억원)
울 산	38억원	■ 하이테크밸리 변전소·송전선로 (38억원)
새만금	47억원	■ 용수·폐수 관로 (47억원)
합 계	1,439억원	

□ 공공기관 지원 현황

-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10조원 이상 규모)를 통해 한전·수공·LH 등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구축

□ 국비 지원기준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폐수·도로 4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
-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적용하되, **특화단지별 500억원 한도***로 지원

* 단, 기업 투자액이 他 특화단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용인·평택 특화단지는 용인 일반산단, 용인 국가산단, 평택 일반산단으로 구분하여 각 500억원씩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비율 >

구 분	특화단지별 투자 규모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30%	25%
中 구간	10~100조원	3~30조원	1~10조원	20 → 25%	15 → 20%
下 구간	10조원 미만	3조원 미만	1조원 미만	10 → 20%	5 → 15%

참고 4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주요 내용('24. 6.)

◇ '24. 5월 발표된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충 방향」 구체화
→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금융·재정·세제·기반시설 지원

① 금융지원

– 투자자금 : '27년까지 산은에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출자 → 17조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24.7월부터 가동

* 적용 금리 : (대기업) 최대 1.0%p 우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p 우대

– 소부장·팹리스 : 現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 3천억원 ('23~'25년 출자) + 신규펀드 8천억원* ('25~'27년 출자) 추가

* 구성 : (재정) 2천억원 + (정책금융) 2천억원 + (민간매칭) 4천억원 = 8천억원

② 세제지원

– 적용기한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대상 기술 확대*

*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 추가 검토('24.12월 결정 예정)

– 적용범위 : SW 구입비 등도 대상에 포함*,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적용

* 공제대상 비용 추가 : SW 구입비, 연구시설 임차·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자문비

** 현재는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인력의 인건비만 적용

– 감가상각 : R&D용 기계장치 감가상각 기간 단축 (5년 → 3년)

③ 재정지원 : '22년~'24년 3조원 → '25년~'27년 5조원

– R&D 예타 신속화 :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5,569억원),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9,405억원, 과기부), 미니팹 구축 (9,060억원)

- 글로벌 R&D 확대 : 글로벌 첨단 공공 웹과 국내 공공 웹 연계 (425억원, 과기부), 한 - 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 사업화 지원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과기부), 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지원
- 인력양성 : 반도체 특성화대학 (現 18개소) · 대학원 (現 6개소) 및 AI반도체 대학원 (現 3개소) 확대

④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지원

- 도로 : 국도 45호선 이설 · 확장 예타 면제, 국비 지원
- 용수 : 국가 · 일반산단 통합 용수관로 예타 면제, 수공 비용 분담
- 전력 : LNG 발전 (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 · 민간이 분담하되, 8월말 세부 계획 수립